

#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

(주)용인죽전대한제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"갑")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(이하 "을")는 "갑", "을"간 기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.

- 다 음 -

## 1. 변경내용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제7조 (독립된 업무담당자 등)	② "갑"은 주택임대관리회사를 선정하여, 본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, 임차인 관리, 기타 주택임대관리계약 상 정한 업무를 주택임대관리회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, "을"은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한 관리·감독 의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고유한 과실이 없는 한,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	② "갑"은 주택임대관리회사를 선정하여, 본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, 임차인 관리, 기타 주택임대관리계약 상 정한 업무를 주택임대관리회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(이하 삭제)
제10조 (보수)	"갑"은 "을"에 대하여 자산운용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별지 1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.	① "갑"은 "을"에 대하여 자산운용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별지 1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. (이하 신설)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, "갑"은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다. 1. "갑"과 "을"이 체결하는 표준사업약정서(자리츠용)에 따라 "을"이 임대 및 매각부진에 대한 대책(시장상황, 이행기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판매촉진대책수립 등)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2. "갑"의 모리츠로부터 수수료 지급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중단된 수수료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"갑"의 모리츠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본 리츠가 체결하는 표준사업약정서(자리츠용)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, 일괄지급한다.
별지 2. 계약의 해지 1. 계약해지 사유	-	(이하 신설) 다. "갑"이 체결하는 표준사업약정서(자리츠용)에 따른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.

## 2. 기타

본 변경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를 따르기로 한다.

“갑”과 “을”은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,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, 이 변경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붙임. 기체결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.

2025. 1. 6 .

“갑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 아셈타워)  
(주)용인죽전대한제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
대표이사 권 용 하 (인)

“을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 아셈타워)  
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 
대표이사 박 종 철 (인)



#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

(주)용인죽전대한제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"갑")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(이하 "을")는 "갑", "을"간 기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.

- 다 음 -

## 1. 변경내용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제7조 (독립된 업무담당자 등)	② "갑"은 주택임대관리회사를 선정하여, 본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, 임차인 관리, 기타 주택임대관리계약 상 정한 업무를 주택임대관리회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, "을"은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한 관리·감독 의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고유한 과실이 없는 한,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	② "갑"은 주택임대관리회사를 선정하여, 본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, 임차인 관리, 기타 주택임대관리계약 상 정한 업무를 주택임대관리회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(이하 삭제)
제10조 (보수)	"갑"은 "을"에 대하여 자산운용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별지 1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.	① "갑"은 "을"에 대하여 자산운용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별지 1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. (이하 신설)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, "갑"은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다. 1. "갑"과 "을"이 체결하는 표준사업약정서(자리츠용)에 따라 "을"이 임대 및 매각부진에 대한 대책(시장상황, 이행기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판매촉진대책수립 등)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2. "갑"의 모리츠로부터 수수료 지급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중단된 수수료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"갑"의 모리츠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본 리츠가 체결하는 표준사업약정서(자리츠용)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, 일괄지급한다.
별지 2. 계약의 해지 1. 계약해지 사유	-	(이하 신설) 다. "갑"이 체결하는 표준사업약정서(자리츠용)에 따른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.

2. 기타

본 변경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를 따르기로 한다.

“갑”과 “을”은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,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, 이 변경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붙임. 기체결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.

2025. / . 6.

“갑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 아셈타워)  
(주)용인죽전대한제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
대표이사 권 용 하 (인)



“을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 아셈타워)  
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 
대표이사 박 종 철 (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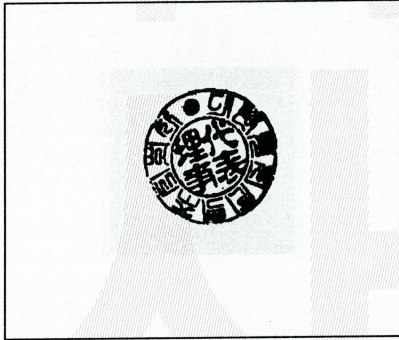




# 인 감 증 명 서



법인등록번호 : 110111-1492513



상 호 :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 
본 점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 아  
셈타워)

대표이사 박종철  
(610529-144673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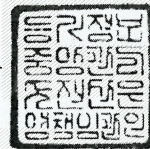
관할등기소 :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: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

이 인감은 등기소(과)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2025년 01월 03일

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
전산운영책임관



수수료 1,200원 영수함.

1.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,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 (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)

11203121111010300111005520012512092411A1K1D1KOL1S1 125

발급확인번호 OAZM-MUNF-ZZY3

- 1/1 -

